

# 石油事業法 시행령改正의 背景과 主要内容



徐 周錫  
(動力資源部 油政課長)

## 1. 改正의 背景

石油事業法施行令(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이 81年 12月 31日자로 改正公布되었다. 이로써 시행령은 75年 12月 26日 制定된 후 6번째의 改正을 하게 되었다.

1974年 第1次 石油波動이 끝난 以後 國際原油市場에서는 한동안 供給過剩現象과 더불어 原油價格의 安定추세가 持續되었다. 그러나 1977年에 들어서 사우디와 쿠웨이트原油價가 二元化 됨으로써 國際原油價의 多元化現象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따라 石油事業法(이하 “법”이라 한다)에 石油事業基金의 設置 根據가 마련되었다. 그러다가 1978年末 第2次 石油波動以後에는 國際原油價의 多元化 現象이 本格化되기 시작했고 이란의 輸出物量減少로 供給不足現象이 나타나게 되어 原油確保마저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國際原油事情에 따라 國內 精油社別로 原油導入價格이 相異해지게 되었고, 社別 損益差異가 過多하게 發生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非常時에 對 備한 備蓄의 必要性이 더욱 절실하게 대두되었다. 이에 政府는 1979年 施行令을 改正하여 法에 規定되어 있던 石油事業基金制度를 運用하게 되었다. 즉 石油事業基金을 安定基金과 備蓄基金으로 区分하고 徵收節次, 基金의 用途等에 關한 細部 規定을 두게

되었다.

그러나 多元化되어 있던 原油價를 平準化하여 國內石油製品價格을 安定시키기 위하여 造成되고 있는 安定基金은 그간의 運用過程에서 불때 石油産業의 自律性 提高보다는 政府依存度를 深化시킨 面도 있었으며, 低價原油導入意慾을 低下시키는 등의 問題點이 있었다.

또한 法에는 石油事業基金을 石油開發事業에도 使用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었으나, 施行令에 根據規定이 없어 現在 國內外에서 活潑하게 進行되고 있는 石油開發事業을 本格的으로 뒷받침 할 수 없는 問題가 있었다.

이에 政府는 關係部處 및 專門家를 포함하는 油價政策業務作業班을 構成하여 油價制度를 中心으로 한 石油政策의 改善方案을 講究하게 되었으며, 그 結果를 금번 施行令改正에 重點적으로 反映하게 된 것이다.

## 2. 改正의 主要内容

### 가. 石油精製業 許可基準 緩和(第5條)

從前에는 法第4條의 但書規定에 依하여 石油精製業의 許可對象에서 除外하는 石油精製業을 1日 100배럴以下の 運轉유를 生産하는 경우로 하였으

나, 許可對象에서 除外하는 石油精製業을 擴大하여 1일 2,000배럴 以下의 용제, 아스팔트, 윤활유를 生産하는 경우로 하였다.

이는 需統統制의 必要性이 적은 非燃料油의 경우 事業에의 參與를 自由化 시키고자 한 것이다.

#### 나. 石油事業基金 徵收額 調整(第9條의 4)

우선 備蓄基金은 政府의 備蓄目標을 達成하는데 必要한 資金을 調達하기 위하여는 1달러以上을 追加로 引上하여야 할 것이나, 國民經濟 및 家計負擔을 고려하여 漸進的으로 對處해 나가기로 하고 金 本에 50센트만을 引上하게 된 것이다.

다음 安定基金은 油價調整時마다 施行令을 改正하여야 하는 行政의 번잡성을 避하기 위하여 導入 原油 1배럴당 3달러 50센트 範圍內에서 動力資源 部長官이 經濟企劃院長官과 協議하여 告示하는 金額을 徵收하는 것으로 改正하였다. 앞으로는 油價 調整作業의 바쁜 와중에서 施行令改正을 同時에 推 進하기 위하여 關係部處를 들락거려야 했던 일들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또한 81年 4月19日 油價 調整前까지 徵收해 왔던 基準價格과의 差額徵收 條項을 削除하여 4.19價格調整時 制度改善 事項을 施行令에 反映하였다.

#### 다. 輸出用 石油製品 生産에 所要된 原油에 대한 基金의 還給制度 新設(第9條의 4 第8項)

現在 國內의 精製施設能力은 지난 봄 湖南精油의 日 15만배럴 規模의 增設 工事が 完工됨에 따라 日 79만배럴에 達하고 있으나, 現在 稼動水準은 日 50 萬배럴 程度에 미치고 있다. 이는 景氣回復의 지연 에 따른 石油類需要增加 추세 둔화 및 消費節約等 에 起因한 것으로서 日 30만배럴 程度의 精製施設 이 남아 도는 實情에 있다. 이와 같은 剩餘施設을 活用하는 方案으로서는 石油製品을 輸出할 것을 條件으로 原油를 導入精製하여 生産된 製品을 輸出 하고 一定率의 加工手数料를 받는 受託加工貿易方 法이 있으나 종전에는 施行令上 일단 輸入된 原油 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石油事業基金을 徵收하도 록 되어 있어 이러한 形態의 輸出入이 經濟性을 상 실하게 되는 問題가 있었다.

이에 剩餘精製施設을 最大限 活用할 수 있도록 石 油製品을 生産하여 輸出할 것을 條件으로 原油導入 契約을 締結하고 그 契約에 따라 導入된 原油를 精 製하여 石油製品을 輸出하는 경우, 輸出된 石油製 品生産에 所要된 原油에 대하여는 일단 納付했던 基金을 還給하여 주는 制度를 新設하게 된 것이다. 다만 輸出 石油製品生産에 얼마만큼의 原油가 所要 되는가를 算出하는 方法은 技術的인 事項이 될 것 이나 이는 動力資源部長官의 告示로 定하게 된다.

여기에서 受託加工 또는 賃加工이란 用語를 使用 하지 않은 것은 貿易去來法과의 解釋上 問題가 야 기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즉 貿易去來法上 受託加工貿易은 原資材를 들여다가 生産된 製品全 量을 輸出하는 경우만으로 解釋되고 있는 反面 石油製品의 경우 이러한 엄격한 意味의 受託加工貿 易이 事實上 不可能한 것이다. 따라서 受託加工 또 는 賃加工이란 用語를 施行令에 使用할 경우는 基 金の 還給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以上과 같이 基金의 還給對象이 되는 原油 에 대하여는 安定基金에 의한 補填도 할 수 없도록 規定함으로써(第9條의 2 本文但書規定 新設) 基金 의 徵收와 補填間의 衡平을 維持시켰다.

#### 라. 石油事業基金의 用途調整(第9條의 5 第1項 및 第2項)

##### 1. 備蓄基金의 用途

從前에 備蓄基金은 石油備蓄施設의 設備과 備蓄 用 石油購入의 경우에만 使用할 수 있도록 規定되 어 있었으나 여기에 追加하여 韓國石油開發公社의 石油備蓄 및 開發事業의 推進에 必要한 運營費를 補 助할 수 있게 하였으며, 石油精製業者等 民間이 石 油備蓄을 推進하는 경우 所要되는 資金의 全部 또 는 一部와 國內外 石油資源의 開發 및 探查에 所要 되는 資金도 備蓄基金에서 融資할 수 있도록 하였 다.

油開公은 設立되지 얼마되지 않은 關係로 아직 뚜렷한 收益事業을 갖고 있지 못한 反面 政府代行 事業의 性格을 갖고 있는 石油備蓄 開發事業의 推 進에 많은 運營費를 支出하고 있어 資本 잠식현상 이 招來되고 있었다. 이같은 資本잠식현상은 公社 의 健全한 發展을 阻害하는 要因이 되므로 一定한 範圍內의 公社運營費를 備蓄基金에서 補助할 수 있

는 根據를 둔 것이다.

또한 石油備蓄에는 莫大한 費用이 所要되기 때문에 現在 國內의 民間備蓄水準이 未洽한 實情에 있어 石油精製業者 石油販賣業者 또는 主要 石油消費者가 石油備蓄을 함에 必要한 資金을 融資할 수 있게 하였으며, 產油國으로의 반돌음을 위해 國內外에서 推進되고 있는 石油開發事業을 本格的으로 뒷받침하고자 開發 및 探查에 所要되는 資金을 融資할 수 있는 根據를 두었다.

備蓄基金의 融資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動力資源部長官의 告示로 定하게 된다. (第9條의 5 第3項)

② 安定基金의 用途

從前에 安定基金은 基準價格과 差額의 範圍안에서의 損失補塡를 비롯하여 6개項目의 用途에 使用되었으나, 이를 3個項目으로 縮少하였다.

이를 간략하게 要約하여 圖表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安定基金의 用途)

從 前	改 正
1. 原油의 基準價格과 差額의 範圍안에서의 損失補塡	1. 左 同
2. 石油製品導入에 따른 損失補塡	2. "
3. 原油의 輸入에 따른 換差損의 補塡	3. 原油導入先 多邊化를 促進하기 위한 追加運送費의 補塡.
4. 割増料, 프리미엄, 其他 輸入附帶費用,	4. 削 除
5. 石油製品價格 安定에 寄與할 原油輸入의 促進 奨勵	5. "
6. 其他 石油製品價格 平準化로 因하여 精製業者에게 發生한 損失補塡.	6. "

위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從前 第9條의 5 第2項 第3号 乃至 6号를 削除하고 第3号에는 原油導入先의 多邊化를 推進함에 追加로 所要되는 運送費를 安定基金에서 補塡할 수 있는 條項을 新設하였다. 이는 政府의 導入先 多邊化 政策을 効率的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며, 從前 規定에 依하

여 安定基金으로 補塡하던 換差損, 割増料, 促進奨勵金等은 이미 지난해 4月 19日, 11月 29日 油價調整 價格에 反映시켰지만 이러한 問題들은 앞으로도 價格政策으로 解決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限定된 範圍內이지만 精油社의 政府依存度를 減少시켜 社間 競争을 誘導하고 高價原油 導入을 抑制하며 低價原油導入을 促進하는 效果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앞으로의 方向

以上에서 간략하게나마 施行令의 主要改正內容 및 背景을 說明하였지만 아직도 石油事業法令에는 未備한 點이 있다. 例를 들어 보면 石油類製品의 品質管理 및 이의 團束에 關한 規定이 未備되어 있는 關係로 最近 市中에 범람하고 있어 石油類流通 秩序를 紊亂시키는 要因이 되고 있는 類似揮發油를 비롯한 不正油類에 效果의인 對策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주로 燈油를 販賣하고 있는 副販店의 경우 現行 石油事業法令上에는 政府의 政策遂行을 뒷받침할만한 制度的 裝置가 具備되어 있지 못하다.

또한 石油事業法은 各種 許可 및 申告制를 規定하고 있고 政府의 廣範圍한 調整命令制度를 規定하고 있는 바, 과연 이러한 制度가 自由競争體制로 점차 轉換되어 가고 있는 經濟構造의 基本方向과 모순되는 面은 없는지 또는 政府의 不必要한 關與가 介在될 要因은 없는지를 檢討하여 向後 改正에 反映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아직은 OPEC의 原油價 單一化가 完全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原油價 單一化가 定着되는 경우, 現在의 安定基金制度 및 基準源油價制度의 全面的인 再檢討가 不可避할 것이다.

앞으로 政府는 以上の 모든 問題點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와 輿件이 비슷한 日本, 自由中國 等 外國의 石油關係法令을 比較하며 民間專門家, 精油業界 等의 意見을 들어 法令의 改正에 反映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精油産業은 營利를 追究하는 私企業이라는 側面과 國民生活의 基礎에 너지源을 供給하는 國家基幹産業이란 側面 즉 營利性和 公益성을 同時에 갖고 있는 點이 그 特徵이다.

이러한 相互 모순되는 兩面을 調和시킬 수 있는 方向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